

# 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		
의안번호	제11호	제 출	서승필 의원 등 4명
제 출 일	2024. 2. 13.	회 부 일	2024. 2. 13.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2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, 합리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인사청문 대상(안 제3조)
- 나. 인사청문특별위원회(안 제4조)
- 다. 인사청문(안 제5조)
- 라. 의원질의(안 제8조)
- 마. 인사청문의 기간 및 경과보고서의 보고(안 제10조)

## 3. 검토의견

- 가.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(2023.9.22.시행) 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